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5월 30일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고령 및 노인친화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책무, 추진계획(안 제4조 ~ 제5조)
- 생산품 우선구매, 보험가입(안 제8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개정 배경 및 취지

-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10. 31., 시행 2024. 11. 1.)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목적)는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을 해당 법 제명으로 개정함.
- 안 제2조(정의)제1호는 법에서 규정한 노인 지원대상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 제2호는 본 조례의 골자인 ‘노인일자리’에 대하여 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함.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하고자 조문을 개정함.
- 안 제5조(추진계획)제1호는 추진계획에 ‘노인일자리 지원의 기본방향’을 신설하여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구체화하였으며,
 - 제3호는 교육 대상을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서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교육 대상을 넓힘.
- 안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는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보험가입)는 구청장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

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에게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할 의무가 부여됨.
- 한편,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아울러, 해당 내용은 이미 영등포구에서 시행 중인 사항이므로, 제도적·행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에서 규정한 사항(정의, 생상품 우선 구매, 보험가입 등)을 영등포구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4
----------	-----

발의연월일: 2025. 5. .

발의자: 이성수·차인영·남완현
전승관·정선희(5인)

1. 제안이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고령 및 노인친화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 추진계획(안 제4조 ~ 제5조)

다. 생산품 우선구매, 보험가입(안 제8조 ~ 제9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일자리 지원의 기본방향

3.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 3. (생 략)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 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생 략)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생 략)

<신 설>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설>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노인일자리 지원의 기본방향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삭 제>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

<u><신 설></u> <u>제8조</u> (생 략)	<u>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u> <u>제9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 <u>제10조</u> (현행 제8조와 같음)
---	---